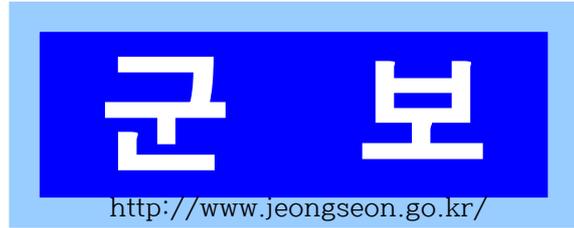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390호 2016. 6. 15. (수)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6-518호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시범사업 공고 ..... 1
- 정선군 공고 제2016-519호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 1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 공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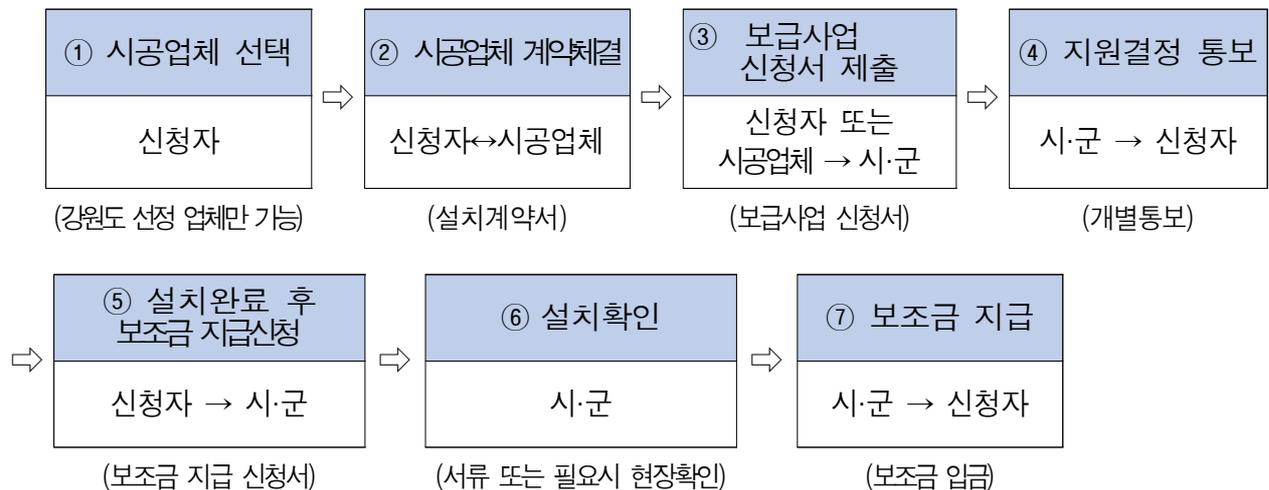
정선군 공고 제2016-518호

## 2016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시범사업 공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2016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정 선 군 수

1. 지원기간 : 2016. 6. ~ 2016. 12. 31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선착순)
2. 지원대상 : 정선군 관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후 신청 가능
3. 지원시설 : 소형태양광 발전기 1세트
4. 지원규모 : 20호
5. 지원예산 : 8,000천원 (도비 2,400천원, 군비 4,200천원)
6. 보조금 지원금액 : 용량기준별 단가의 50%범위내(최대 40만원, 만원미만 절사)  
※(붙임#2) 정선군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참여업체 현황 참조
7. 추진절차



## 8. 서류접수

## 가. 시공업체 선택 및 계약체결

1) 강원도에서 선정한 소형태양광 설치 시공업체(붙임#1)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

## 나. 신청서 접수

1) 접수일정 : 2016. 06. 10. ~ 2016. 12. 31까지(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선착순)

## 2) 제출서류

① 가정용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서식 제2호)

② 가정용 소형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서식 제1호)

3) 제출자 : 지원신청자 또는 시공업체(방문접수)

4) 접수장소 : 정선군 지역경제과

## 다. 선정통보 : 개별통보

라. 설치기간 :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협의한 경우는 예외

## 마.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 1) 제출서류

① 가정용 소형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

② 가정용 소형태양광 설치 완료 사진(별지서식 제4호)

③ 가정용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설치 참여 및 완료 확인서(별지서식 제5호)

④ 보조금 지급 신청자 통장사본

2) 제출자 : 지원신청자 또는 시공업체(방문접수)

3) 신청마감 : 2016. 12. 31.까지

4) 접수장소 : 정선군 지역경제과

## 바. 보조금 지급방법

1)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검토 후 보조금 지급(필요시 현장확인)

## 9. 유의사항

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00시군은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함.

나.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신청자는 설치가격(보급가격)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고, 지방비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 후(위임장 제출) 시공업체에 지급

라. 정선군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정선군이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마. 시공업체는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하며 설치 가구주에게 설치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바. 본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정선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함

사.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 지역경제과(☎560-2434)로 문의 바람

- 붙임 1. 2016년 정선군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참여 업체(강원도선정)
- 2. 정선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신청서식(별지 서식 1~6호)

## 붙임 #1

업 체 명		(주)에타솔라	
대 표 자		한 민	
소 재 지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아이티밸리길12	
대표전화		033-344-8501	
담당자 휴대전화		이인규 / 010-4512-1324	
설비용량		260W (난간형)	260W (콘솔형)
설치가격 (원/Set)		800,000	850,000
보조금 (원)		400,000 (50%)	400,000 (47%)
자부담 (원)		400,000 (50%)	450,000 (53%)
태양광 모듈	용량 (W)	260W * 1EA	
	규격 (mm)	983 * 1,645 * 35	
	제조사/ 모델	(주)럭스코 / LXP-3J260WA1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효율	16.08%	
인버터	용량 (W)	250	
	제조사/ 모델	한솔테크닉스(주) / HSPV-250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효 율	92.37%	
모니터 링장치	제조사/ 모델	주식회사 다원디엔에스 / PM-B310-S	
	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거 치 대	제조사	주식회사 경동솔라에너지	대성에스앤에프

별지 서식 1

※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 →시군)

**정선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계 약 당사자	신청인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휴대폰		
	시공 업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핸드폰		
계 약 내 용	분 야	소형태양광	설비타입			설치용량	W
	사 업 명	정선군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총사업비	금	원	
	설치장소주소			지방비보조금	금	원	
	설치기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자부담금	금	원	
	계약금액	금		원			
본 문 조 항	제1조 (계약의 원칙) (신청인)과 (시공업체)는 00시군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과 통상의 계약 일반을 준용한다.						
	제2조 (계약금)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부담비용) ①(신청인)은 (시공업체)가 설치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시공업체)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체)는 (신청인)에게 00시군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인)과 (시공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시공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시공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시공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사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시공업체)는 설치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신청인)은 00시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시공업체)의 하자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 (시공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00시군의 사업 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b>2016 년 월 일</b>							
[신청자명]			[인]				
[시공업체]			[인]				



별지 서식 3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시군)

##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설치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자			
주 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설 치 일 시	2016. . .		
설 치 규 모	태양광 :	W	타 입 :
설 치 장 소	(우편번호 : )		
총 사 업 비	계	보조금	자부담
	원	원	원
신 청 금 액	금 원	시공업체 계좌번호	
시 공 업 체		담당자 및 연 락 처	

위와 같이 2016년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에 따른 소형태양광 설비가 설치 완료됨에 따라 정선군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공업체 (인)

### 정선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소형태양광 설치 완료 사진(별지 제4호)
2. 소형태양광 보급사업 설치참여 및 설치완료 확인서(별지 제5호)
3.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지 제6호)

별지 서식 4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서류(신청자→시군)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사진

구 분	설 치 전	설 치 후
설 치 전 경		

구 분	제 품 설 치 완 료 사 진
모 들	
모 들 거 치 대	
인 버 터	
모니터링 장 치	
기타자재	



정선군 공고 제2016-519호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음식 및 숙박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제공을 하고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6월 10일

정 선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16. 6 . 10 . ~ 6 . 24.(15일간)

다. 신청기간 : 2016. 6. 27.~ 7. 8.(10일간/휴일제외) 09:00~18:00

라. 사업기간 : 2016. 8 . 1 . ~ 11 . 30 .

마. 신청대상 : 정선군에 영업소가 소재하고 운영 중인 자

- 음식업소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66㎡이상 업소

- 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단, 관광숙박업소는 제외

- 신청 제외자

: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바.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붙임1]

2)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개선 전 현장사진 포함)[붙임 2, 3]

3) 영업신고증 사본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각 1부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각 1부

7)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사본 1부

8) 건축물 개보수 사용 동의서[붙임4]

※ 임대사업자(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인 경우,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사.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1)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2) 접수처 : 강원도 정선군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위생부서

##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

### 가. 음식점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취수·배수,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조리장 : 개방형 조리장, 바닥 타일 교체

- 영업장 :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 화장실 : 남녀 구분, 손 씻는 시설

※ 위생관리와 무관한 단순 집기류, 소모품 구입 등은 지원 제외

### 나. 숙박업소

- 건물외관 : 외벽, 간판, 복도·계단 등 조명,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접객대 :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요금표 게시)

- 객실구조 : 더블베드를 싱글 또는 트윈베드로 교체

- 조식시설 :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

다.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천만원 범위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지원

## 3. 지원조건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4.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16. 8월

나. 선정방법 : 군 자체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다. 선정기준 : 기본사항, 환경개선 필요성, 기타 등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 선정

라. 지원결정 안내 : 2016. 8월

※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만 안내합니다.

5. 보조사업 정산

가. 정산시기 : 2016. 12월

나. 정산방법 : 보조사업자는 사업 집행 후 5일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선군 위생부서에 제출

※ 선 정산후 보조금 지급

1) 제출서류 : 자금지원신청서[붙임5], 사업 결과 보고서(붙임2), 공사·납품확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카드영수증사본, 사업 전·후 사진(붙임3), 기타 증빙서류 등

6.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부적격자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위생부서(☎ 560-20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결과보고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2. 사업기간 :
3. 소재지 :
4. 사업비 :            원
5. 사업계획서(완료 후 결과보고서)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9,000,000		
예시) 조리장 벽공사	3,000,000	벽철거 1,500,000 시멘트 등 1,500,000	
	1,000,000	인부임 등 1,000,000	
예시) 침대구입	5,000,000	싱글베드 10개×500,000	

※ 사업내용별 작성(견적서를 토대로 작성)

【붙임 3】

○ 환경개선 전·후 사진

(공사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업 신청 시 개선 전 사진 제출, 사업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 모두 제출

시설 개선 전	시설 개선 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설명	사진 설명



【붙임 5】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자금 지원 신청서(사업 정산 시)

음식업소

숙박업소

신청인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영업장 규모(m <sup>2</sup> )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최초 영업 허가증 교부일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사업비(천원)	총 소요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음식 및 숙박업 환경개선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결과 보고서 1부(개선 전·후 현장사진)
2. 세금계산서 사본 1부
3. 공사·납품확인서 사본 1부
4.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1부(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사본 1부)
5.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이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